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29
----------	-----

2021. 1. 28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0일

–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–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심기보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지방회계법」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의 제12장(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~95조)을 삭제하고 「지방회계법」 제7장(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~제50조)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려 함.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및 용어 정비(안 제3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
 - 경리관 → 재무관, 채무관리관 → 부채관리관
- 관계법령 정비(안 제7조제2항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
-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4조제4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4항, 제15조)
 - 전자이미지관인 → 전자이미지공인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지방회계법」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, 조례 관련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의 제12장(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~95조)이 삭제되고 「지방회계법」 제7장(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~제50조)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관련법령 정비

- 조례의 관련 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 및 제91조가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 및 제46조로 변경하였고,
-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
 -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정비하였고,
 - 안 제4조제4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4항, 제15조
-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
 - 조례가 2018년 7월 6일 일부개정된 후 개정되지 않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.
 -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○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였고,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2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심기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629
-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월 11일

발의자 : 심기보, 임영은, 이옥규,
박상돈, 오영탁, 육미선,
전원표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회계법」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의 제12장(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~95조)을 삭제하고 「지방회계법」 제7장(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~제50조)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려 함.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및 용어 정비(안 제3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
 - 경리관 → 재무관, 채무관리관 → 부채관리관
- 관계법령 정비(안 제7조제2항)
 -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

-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4조제4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4항, 제15조)
 - 전자이미지관인 → 전자이미지공인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,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”를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“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”을 “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공인이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”를 “공인이란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”로,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,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내지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”을 “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정사각형으로하며”를 “정사각형으로 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유인시”를 “유인 시”로,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원,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“때”를 각각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내지”를 “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,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전자이미지관인”을 “전자이미지공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자이미지관인”을 “전자이미지공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년월일”을 “사용 연월일”로, “폐기 년월일”을 “폐기 연월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전자이미지관인”을 “전자이미지공인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폐기시”를 “폐기 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자가 관수자”를 “사람이 관수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있을시는”을 “있을 때에는”으로, “통보하여”를 “알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을시에는”을 “있을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 화일”을 “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요하지 아니하는”을 “하지 않는”으로, “이중케비넷”을 “이중캐비닛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”를 “관리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단서 중 “전자이미지관인”을 “전자이미지공인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이관 받은”을 “이관받은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사고발 생일시”를 “사고발생일시”로, “처리전말”을 “처리결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사용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다른법령”을 “다른 법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문서생산담당직원”을 “문서생산 담당 직원”으로, “때에는 즉시”를 “때는 즉시”로, “인쇄시와 동일한”을 “인쇄 시와 같은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표2 및 별지1호서식과 별지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(제5조1항 관련)

공인의 규격

(단위 : cm)

구 분			한변의 길이	비고
청 인	합의제기관(의결기관, 자문기관, 기타합의제기관)		3.6 이하	
직 인	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지사 및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	3.0 이하	
	의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급,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	2.7 이하	
	인 회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급,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	2.4 이하	
	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,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	2.1 이하	
	직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	2.4 이하	
			2.0 이하	
	계		길이 3.0 폭 1.3 반타원형	
인				

[별지 제1호서식](제8조 제2항 관련) <개정 2000. 3. 13, 2003. 11. 28, 2018. 7. 6.>

기 관 명

수신자 ()

공인등록(재등록) 신청

제 목 공인폐기신고

전자이미지공인등록(재등록) 신청

공 인 명				
종 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이미지 공인
등록(재등록, 폐기) 사 유		<input type="checkbox"/>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인		
폐기대상 공인처리	폐기예정일 (분 실 일)	년	월	일
	폐기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	폐기한 사람 (분실한 사람)	소속 :	직급 : 성명 :	
비 고				

발신명의 ☐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 () 전송 () /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 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2호서식](제8조 제3항 관련) <신설 2000. 3. 13, 개정 2003. 11. 28, 2018. 7. 6.>

전자이미지공인대장

관인 명칭					
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	
[] 등록 [] 재등록	전자이미지공인 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	년	월	일
		등록(재등록) 사유			
		관리부서			
	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(부서) 현황				
	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	사용 기관(부서)	시스템 명칭	통보일	최초 사용일
비고					
폐기	전자이미지공인 인영	폐기일	년	월	일
		폐기 사유			
		폐기한 사람	소속:	직급:	성명:
	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(부서)에 대한 조치				
	사용 기관(부서)	시스템 명칭	통보일	최종 사용일	

<작성 방법>

-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[] 등록란에 ▼표를, 재등록하는 때에는 [] 재등록란에 ▼표를 한다.
-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-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m²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, 규격, 등록, 재등록, 폐기 공고방법,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(생 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의결기관, 자문기관, <u>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,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.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3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) 회계관계공무원의 <u>공인이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에 따라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, 규격, 등록, 재등록, 폐기 공고방법,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<u>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의결기관, 자문기관, <u>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,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) 회계관계공무원의 <u>공인이란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에 따라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인의 비치 및 사용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<u>사무</u>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</u>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<u>컴퓨터화</u> 일에 등록한 <u>전자이미지관인</u>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공인의 비치 및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<u>사무</u>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</u>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<u>컴퓨터파일</u>에 등록한 <u>전자이미지공인</u>을 사용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공인의 글자 및 규격) ① 공인의 모양은 <u>정사각형으로</u> 하며 충청북도 본청의 공인,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의 크기는 별표 2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도지사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<u>유인</u>시는 도지</p>	<p>제5조(공인의 글자 및 규격) ① 공인의 모양은 <u>정사각형으로</u> 하며 충청북도 본청의 공인,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의 크기는 별표 2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도지사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<u>유인 시</u>는 도지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사의 승인을 <u>얻어</u> 가로·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공인의 재료)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<u>아니하는</u>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각인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9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원,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공인의 등록·재등록)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.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<u>내지</u>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</p>	<p>사의 승인을 <u>받아</u> 가로·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공인의 재료)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<u>않는</u>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각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「지방회계법」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원,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공인의 등록·재등록)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.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<u>또는</u>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(재등록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, 전자이미지관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(재등록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,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(공고) ① 공인(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)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을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등록,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 	<p>제9조(공고) ① 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)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을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등록,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

현 행	개 정 안
<u>용년월일</u> 또는 폐기공인의 <u>폐기 년월일</u> 3.~4. (생 략)	<u>용 연월일</u> 또는 폐기공인의 <u>폐기 연월일</u> 3.~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공인대장)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(<u>전자이미지관</u> 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)에 <u>의한</u>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, 재등록 또는 <u>폐기</u> 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10조(공인대장)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(<u>전자이미지공인</u> 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)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, 재등록 또는 <u>폐기</u> 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관수자의 지정) ① 공인의 관수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. 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<u>자가</u> 관수자가 된다. ②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(재지정)할 필요가 <u>있을시는</u>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게 <u>통보하여</u>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야 한다. ③ 관수자가 사고가 <u>있을시에는</u>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	제12조(관수자의 지정) ① 공인의 관수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. 다만,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<u>사람이</u> 관수자가 된다. ②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(재지정)할 필요가 <u>있을 때에는</u>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게 <u>알려</u>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 ③ 관수자가 사고가 <u>있을 때에는</u>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

현 행	개 정 안
<p>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<u>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 화일</u>의 부정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<u>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</u>의 부정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관수방법)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(이하 “공인함”이라 한다)에 넣어 두어야 하며,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<u>요하지 아니하는</u>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<u>이중캐비넷</u>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관수방법)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(이하 “공인함”이라 한다)에 넣어 두어야 하며,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<u>하지 않는</u>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<u>이중캐비닛</u>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조(인영의 보존)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,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<u>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4조(인영의 보존)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,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<u>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,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, 결재 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<u>전자이미지관인</u>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,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, 결재 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<u>전자이미지공인</u>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(“발행·발급·발신 등” 이하 같다)하는 시행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 등·초본 등 민원서류와 <u>전자이미지관인</u>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공인의 폐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총무과장은 <u>이관 받은</u>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공인의 사고 보고 등)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, <u>사고발생일시</u>, 장소, 사고내용, 사고후의 <u>처리전말</u>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인영의 인쇄사용) ① 제</p>	<p>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(“발행·발급·발신 등” 이하 같다)하는 시행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 등·초본 등 민원서류와 <u>전자이미지공인</u>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공인의 폐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총무과장은 <u>이관받은</u>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공인의 사고 보고 등)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, <u>사고발생일시</u>, 장소, 사고내용, 사고후의 <u>처리결과</u> 등 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인영의 인쇄사용) ① 제5</p>

현 행	개 정 안
<p>5조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<u>사용하고자 하는</u>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, 인쇄량,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조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<u>사용하려는</u>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, 인쇄량,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p>
<p>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<u>다른법령에</u>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<u>다른 법령에</u>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
<p>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<u>문서생산담당직원</u>이 입회·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,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<u>즉시</u>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폐기하고,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.(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<u>인쇄시와 동일한</u> 절차로 시행한다.)</p>	<p>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<u>문서생산 담당 직원</u>이 입회·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, 인쇄를 마쳤을 때는 <u>즉시</u>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폐기하고,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.(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<u>인쇄 시와 같은</u> 절차로 시행한다.)</p>
제19조(계인의 사용) 계인의 사	제19조(계인의 사용) 계인의 사

현 행	개 정 안
<p>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 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<u>한하여</u> 사용하며 증명발급 등의 일반사 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 는다.</p> <p>제20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</u> 정한다.</p>	<p>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 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<u>한정하</u> <u>여</u> 사용하며 증명발급 등의 일 반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 지 않는다.</p> <p>제20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</u> 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회계법

제7장 회계관계공무원

제44조(출납원)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출납원은 법령,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·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,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등 출납원,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.

제4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4절 관인의 관리

제40조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